

의안번호	제 48 호
의결 (보고)	2018.08.23. (제13회)

과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보건행정과장
제출연월일	2018.08.21.

##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정이유

-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중 생활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체육시설 이용 시민의 간접흡연을 예방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안 제3조제1항)
- 나. 「학교보건법」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관련 조항 정비(안 제3조제1항제1호)
- 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중 생활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안 제3조제1항제4호)

### 제 정 조 례 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생활체육시설 19개소 금연표지판 제작 설치 : 19,000천원(2018년 본예산 편성)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8. 6. 29. ~ 7. 19. (20일간)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제5항”을 “제9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제3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를 같은 항 제5호로 한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제8조제1항 중 “부과한다”를 “부과·징수한다”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위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소관부서		보건행정과 ☎940-5561
입안자	보건행정과장	이 상 례
	건강증진팀장	김 선 임
	담 당 자	이 재 희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파주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p> <p>1.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p> <p>2. ~ 3. (생략)</p> <p>&lt;신설&gt;</p> <p>4. (삭제 2014.8.8)</p> <p>5. (삭제 2014.8.8)</p> <p>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p> <p>②·③ (생략)</p> <p>제8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 ----- ----- 제9조 제7항----- ----- -----.</p> <p>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p> <p>2. ~ 3. (현행과 같음)</p> <p>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p> <p>5. (현행 제6호와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8조(과태료) ① ----- ----- ----- ----- 부과·징수한다.</p>

## □ 관계법령발췌서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5.27., 2016.3.2., 2017.12.3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운영) ① 법 제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군·구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외 체육시설
2. 읍·면·동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

## □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

###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주민의 건강증진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과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시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지역 내 흡연할 수 없는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4. 삭제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1.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 승강장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4. 삭제
5. 삭제
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7. 삭제

② 시장은 흡연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외의

시설 및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는 누구든지 흡연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금연구역 지정방법)**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장소는 개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등의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관련 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장소 및 범위에 대하여 시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또는 안내문(이하 “안내표지판 등”이라 한다)을 설치·게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 및 장소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가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게시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 등의 모양·규격·설치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흡연장소의 설치 등)** ① 시장 또는 소유자 등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실의 설치 기준·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다.

③ 삭제

**제7조(금연교육 등)** ① 시장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주민에게 교육·홍보해야 하며 민간단체, 기업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하거나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의 금연 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 등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및 각종 홍보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나 사회단체 등을 금연 홍보요원 또는 홍보단체(이하 “홍보요원 등”이라 한다)로 위촉하여 금연홍보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홍보요원 등에 금연홍보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법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파 주 시



수신 파주시보건소장(보건행정과장)

(경유)

제목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통보

1. 보건행정과-14194(2018.5.23)호와 관련합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한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붙임 검토의견 통보서 1부. 끝.

파 주 시




---

주무관	우소영	여성아동팀장	김영희	가족여성과장	이현주	2018. 6. 4.
협조자						
시행	가족여성과-20085	(2018. 6. 4.)	접수	보건행정과-15353	(2018. 6. 4.)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 <a href="http://www.paju.go.kr">http://www.paju.go.kr</a>	
전화번호	031-940-8681	팩스번호	031-940-4419	/ dnthdud79@korea.kr	/ 비공개(5)	

---

##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8A경기파주020			
정책명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보건행정과		
	담당자명	이동석	전화번호	031-940-5561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8년 5월 23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보건행정과)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과(와) 관련 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8년 06월 04일				
<b>가족여성과장</b>				
(담당자/연락번호 : 우소영/031-940-8681)				
보건행정과장 귀하				



# 파 주 시



수신 파주시보건소장(보건행정과장)

(경유)

제목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알림**

1. 보건행정과-14195호(2018.5.23.)와 관련됩니다.
2. 「파주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칙」 제9조에 따라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부패영향평가 결과

관리번호	주관부서	자치법규명	평가결과	비고
2018-20	보건행정과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동의	

- 붙임 1. 결과통보서 1부.  
2. 개정안 1부. 끝.

파 주 시



주무관 **민세준**      감시팀장 **신승화**      감사관 **전결 2018. 5. 24**  
**방경수**

협조자

시행 감서관-4559      (2018. 5. 24.)      접수 보건행정과-14483      (2018. 5. 25.)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파주시청)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084      팩스번호 031-940-4089      / [m.sisi2@knrea.kr](mailto:m.sisi2@knrea.kr)      / 부부공개(5)

##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 리 번 호	2018-20		
자 치 법 규 명	과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 가 담 당 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민세준
주 관 부 서	보건행정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보건6급 이동석
평 가 결 과 통 지 일	2018. 5. 24.		
통 보 내 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 파 주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제2회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 결과 알림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2018년 제2회 규제 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사결과를 불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부서에서는 이후 관련 업무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 심의내용

안건번호	심의안건명	심의방법	심의결과
제2018-3호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7조제1항 규제강화 적정성 내용심사	서면심의	원안가결
제2018-4호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조제1항제4호 규제신설 심사	서면심의	원안가결

불임 심의 의결서 1부. 끝.

## 파 주 시 장

수신자 건축과장, 파주시보건소장(보건행정과장)



주무관 **김정은**      규제 개혁 팀장 **백운학**      ★소통법 전결 2018. 8. 21. 무관 **이기용**

협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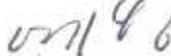
시행 소통법무관-7811      (2018. 8. 21.)      접수

우 10894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 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171      팩스번호 031-940-4099      / gem.gem@korea.kr      /대국민 공개

##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서

1. 심의일시 : 2018. 8. 21.(화)
2. 심의방법 : 서면심의
3. 안     건 : 규제심사 2건
  - 「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7조제1항 규제 강화
  - 「폐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조제1항제4호 규제 신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수정의결(   ), 심의보류(   ), 부결(   )
5. 규제개혁위원회

직 위	성 명	서 명	심의결과 (가, 부)
위원장	이대직		가
위 원	박은주		
위 원	김영숙		가
위 원	송영예		(가)
위 원	홍대원		
위 원	박노주		
위 원	한지숙		가
위 원	장원근		가
위 원	이기영		가